

[인포그래픽] 핀테크·디지털금융, 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의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핀테크·디지털금융 주요 혁신 과제

디지털금융 고도화

- 오픈뱅킹
- MyPayment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마이데이터
- 비금융전문 CB
- 개인사업자 CB
- 개인신용평가 개편 (점수제)
-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금융권의 AI 활용 활성화 유도
-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 라이선스)
- 지급결제·플랫폼 / 자산관리 / 보험 / 대출·데이터 규제 혁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 핀테크 보육기반 확충
- 핀테크 투자 활성화(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IR 개최)
- 해외진출 지원(해외 핀테크 랩 확대, 해외 IR 개최, 핀테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오픈뱅킹과 전자금융업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 부분 오픈뱅킹 현황

구분 (만명, 만계좌)	2019년 12월 17일	2020년 1월 8일	2020년 2월 23일
가입자 (전체 / 은행 / 핀테크)	317 / 317 / -	1,197 / 396 / 801	2,060 / 553 / 1,507
등록계좌 (전체 / 은행 / 핀테크)	778 / 778 / -	2,222 / 1,033 / 1,189	3,586 / 1,479 / 2,107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라이선스제가 시행되기 앞서 신용정보법에서 명시한 모든 부분 규격화

인증방식
+ 보안대책
+ 이용방법
+ API 활용방안

정보주체

- 하나 이상의 데이터 보유자
-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자
-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데이터 수신자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받아 데이터 보유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고 활용

- 신용정보주체 본인
- 마이데이터 사업자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 개인신용평가 회사



데이터 보유자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정당성을 확인한 후 데이터 수신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공공기관
- 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지원서버

데이터 보유자-수신자간 상호인증을 위한 인증서 발급
개인신용정보 전송 동의 내역 관리
효율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 지원
통합지원 포털 운영
API 테스트베드 운영·지원
사이버 위협 공유·대응 지원 체계 수립



데이터 등록 절차

1 데이터 수신자 등록

API 호출을 위한 자격증명을 지원서버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서버에 적용.

데이터 보유자와 수신자간 상호인증, 암호통신을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서버로부터 TLS 인증서 발급.

2 데이터 보유자 등록

데이터 수신자에게 개인신용 전송을 위한 공개 API를 개발.

지원서버가 제공하는 테스트베드를 이용해 개발한 공개 API적합성 테스트.

API 호출을 위한 자격증명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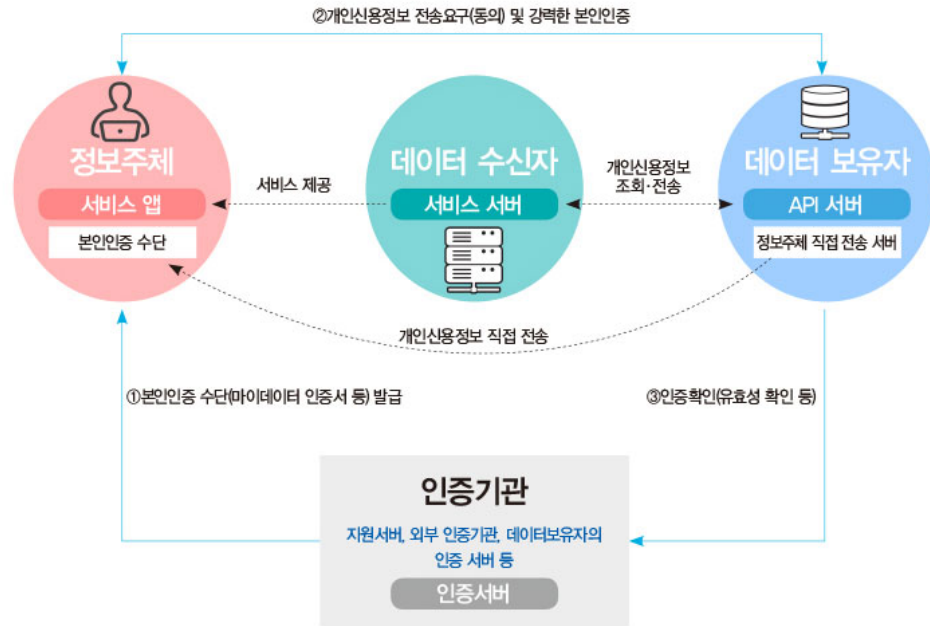
TLS 인증서 등록.

3 정보주체 등록

데이터 수신자를 통해 데이터 보유자에게 개인신용정보 보유 여부 확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해 강력한 본인인증 적용.

정보주체 본인인증 구성 및 절차



신용조회업(CB) 인가단위 세분화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현행	신용조회업(CB업 구분X)	50억원	적용(50% 이상)	
개선	개인CB	50억원	적용(50% 이상)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 이상)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적용(50% 이상)
		기술신용평가	20억원	적용(50% 이상)
		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 (5억 원) 비정형 데이터 (20억 원) 대량의 정형 데이터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h3>1</h3>	행정 부담 추가 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접수 단계 △민간접수기구 신설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 신산업 대상 과제 확대 심사 단계 △신속 처리 제도 보강 △부가 조건 최소 실증 기간(6개월) 폐지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 기준 선제적 마련 법령 정비 단계 △법령 유형별 정비 기간 지정 △법령 정비 지연 시 특례 연장 추진
<h3>2</h3>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수요 견인 • 자금·세제 지원 확대
<h3>3</h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 갈등 조정 프로세스 운영 • 先 적극 행정 後 규제 샌드박스 원칙 적용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 확대 • 규제 소관부처의 규제 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 체계 마련

▶ 2020년 핀테크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2019년(억원)	2020년(억원)	주요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60.82	96.57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80억 원) 및 보험료 지원(7.65억 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2.26	16.55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2.5억 원),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12.45억 원)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2.35	2	국제동향 연구(0.9억 원), 해외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교류(1.1억 원)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9.22	17.43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16.42억 원)
핀테크 보안 지원	9.85	7.03	혁신금융서비스,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보안점검 지원(7.03억 원)
해외진출 지원(기관)	6.8	8.3	전문기관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6.8억 원)
일자리 매칭 지원(신규)	-	2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2억 원)
금융클라우드 지원(신규)	-	34.4	클라우드 이용보조금 및 교육 등(34.4억 원)
전문인력 양성(신규)	-	14.4	교재개발, 온라인 강의 등 핀테크 특화 교육과정 개발(11.4억 원)
합계	101.3	198.68	2019년 대비 97.38억 원 증액(96.1%)

출처 : 금융위원회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